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일자 : 2002. 1. 30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공익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 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제3군 전염병중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 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의하여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 다목
- 나. 기 타 :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부산광역시세정13400-21528)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02. 1.10 ~1.29(주민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 ----- ----- ----- -----.</p>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000년 8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개정 내용과 관련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나
- 조례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조례의 공포일 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상충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여부등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2. 1.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